

검 토 보 고 서

의안
번호

제181호

2019. 12. 4.

건명	논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조배식의원 외 9명	제안연월일	2019. 11. 15.
소관위원회	의회운영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11. 15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(대통령령) 개정(19.3.25.시행)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(표준안)을 반영코자 함.

주요내용

-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신설(안 제4조)
-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알선·청탁 등의 금지 규정(안 제13조)
- 행동강령 교육 실시 신설 등 (안 제40조)

검토의견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」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